

동 지침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20. 8. 18.)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제9판)(‘20. 6. 25 시행) 및 을 질병관리본부 지침관리팀의 자문을 받아,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V-1판)을 수정·추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V-2판

2020. 8. 3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목 차

I. 개 요	1
1. 목적	1
2. 기본방향	1
II.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조치사항	2
1.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2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2
3. 어린이집 등원·출입 시 관리 강화	5
4. 유증상자 발견 시 조치사항	7
5. 시설 휴원관련 사항	8
6. 재개원 전 조치사항	8
III. 지자체 협조사항	9
▷ 참 고 ◁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어린이집 조치사항	10
▷ 서 식 ◁	
1. 재원아동 건강상태 모니터링 기록지(예시)	11
2. 보육교직원 건강상태 모니터링 기록지(예시)	12
3. 코로나19 대응 어린이집 감염 예방 관리 체크리스트	13
▷ 부 록 ◁	
1.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4
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7
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8
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9
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에어컨 사용	20
6. 자가격리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1
7. 올바른 체온 측정 방법	23
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고 대상	25

I 목적 및 기본방향

1. 목적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응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20. 8. 18.)됨에 따라
-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에 대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감염 위험을 최소화
- ☐ 그간의 어린이집 대응지침을 상황에 맞게 개정하여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역할 등을 제시함

◆ 코로나19의 특성

- 증상
 -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이며 대부분 경증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음
 - 그 외 인후통, 두통, 가래, 객혈과 오심, 설사도 나타남
- 전파 방법
 - (비말전파)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발생한 비말(침방울)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 점막으로 들어가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침투하여 감염됨
 - (접촉전파)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이나 표면 등에 묻은 경우,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이나 표면을 손으로 만진 후 눈, 코, 입 등을 만져서 감염
- 전파 특성
 - ① 증상이 경미한 발생 초기부터 전파가 일어나고, 전염력이 높고
 - ②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 확산의 규모가 커짐

2. 기본방향

- ☐ 건강 취약계층인 영유아가 다수 이용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코로나19 관리 체계” 구성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 어린이집 원장은 재원아동, 보육교직원 및 방문객 등의 코로나19 감염예방, 조기 인지 및 확산 방지 조치 실시
 - * 「위생·청소/소독/환기·근무 환경 개선, 발열 등 주기적 모니터링 및 업무배제
- ☐ 어린이집 내에서 코로나19 환자(의심환자 포함)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추가환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

II 코로나19 대응 조치사항

1.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어린이집 내 감염관리체계 구성
 -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성을 부여하고, 근무자 관리, 시설 환경관리,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체계를 유지
 - * (감염관리책임자 역할) 아동 및 보육교직원 발열체크 등 건강상태 확인 총괄, 감염예방 교육, 유증상 아동 미등원 시 매일 유선으로 건강상태 확인 등 감염예방 활동 총괄
 - 재원아동, 보호자, 보육교직원 및 방문자 등 명단 작성·보관
 - * 주소, 연락처, 근무 시간 또는 방문시간 등
- 원장은 의심환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 * 시도 및 시군구 소관부서-관내 보건소-소방서-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 가까운 선별진료소 및 진료의뢰 방법을 미리 파악하여 지체없이 대응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 보육교직원, 재원아동 등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 보육교직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생활속 거리 두기 실천 등 교육
- 재원아동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해외 및 코로나19 발생장소 여행력이 있는 경우 등원 중단 등 방침을 고지하고 게시판에 안내
-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손씻기, 기침예절 등) 및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환경소독 등) 준수, 개인물품(예: 물병, 휴대폰 등) 사용, 위생관리,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감염병 예방 교육
 - 관련 홍보물*을 어린이집 내 게시판에 게시하고 안내[붙임 1~5]
 - *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 어린이집 마스크 사용 기준

- (보육교직원) 보육시간 내 아동 접촉 시, 보호자 포함 외부인 접촉 시 마스크 착용
 - * 면마스크, 덴탈마스크 등도 가능하나, 어린이집 내 유증상자 발생 시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 (아동)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님. 다만, 유아의 경우 노래·윺동 등 집단활동 및 차량 이용 시 마스크 착용 권고
 - * 24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의견 (질병관리본부)
 -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편 참고(붙임2)

□ 환경 위생 관리

- 어린이집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비수동식 수도꼭지 등), 손 세척제(액체 비누, 알콜 70% 이상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 손 씻기후에는 종이타월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어린이집 내 휴지를 비치하며 기침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 어린이집 내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
- 어린이집 내 주요 공간의 청소, 공기정화 및 주기적인 환기 실시
 - * 아동 등원 전, 하원 후 창문을 열어 환기, 보육시간 동안 수시로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 환기 양을 증가시킴
- 어린이집 내 냉방기기 가동 시 ①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인해 비말이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환기, 풍량(바람 세기 등)에 주의 ②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실시 ③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 세기를 낮춰서 사용
 - 밀집도가 높을수록 더 자주 환기 실시
 - * 내부순환방식의 공기청정기 가동은 제한하되, 미세먼지 나쁨 등 필요 시 필터 관리 및 환기에 철저를 기하고 가동
 -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에어컨 사용 편 참고(붙임5)

□ 어린이집 방역(소독) 관리

- (기본) 어린이집은 매일 소독하되, 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 등은 수시 소독 (서식3 참고 체크리스트 작성)
 - 소독 시 소독제 안전사용 수칙*을 준수
 -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소독 편 참고(붙임3)

소독대상 물품	소독 시기
교재교구, 손소독제 용기, 체온계, 공기청정기, 의자, 탁자 등	매일 업무 종료 후
현관 보육실 화장실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조명 스위치 등 자주 접촉하는 부분	수시

- (어린이집 내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발생 시) 어린이집 일시 폐쇄 또는 휴원 후 소독업체 또는 방역당국(보건소 등)에 의뢰하여 즉시 소독 실시

□ 접촉의 최소화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조치사항을 달리 적용하되(참고1), 지역사회 감염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상위 단계 시행 가능
- (보육프로그램 운영 시) 아동 및 교직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직접적인 신체접촉 및 외부활동 자제
 - (보육활동) 보육활동 시 개별놀이 중심 원칙, 불가피한 경우 아동간 접촉 최소화 강구
 - (특별활동) 진행하는 경우 외부강사와 어린이집 구성원간 밀접 접촉 최소화하도록 지도, 악기 등 특별활동 도구 상호 교차 사용 금지
 - * 반드시 외부강사 건강상태, 위험장소 방문 이력 등을 확인
 - (외부활동) 불가피하게 진행하는 경우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준수하고 밀폐도가 낮은 야외에서 진행
 - * 특별활동 및 외부활동 진행 시 보호자 동의 필요
- (급·간식 시) 식사 전·후 손씻기 철저, 식사시 어린이집 여건상 최대 범위 내에서 일정 거리 유지, 가능한 한 일렬 식사 권장
- (집단 행사·교육 시) 가급적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진행하는 경우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을 준수하고 개인위생 및 건강상태 확인 철저

□ 어린이집 외부인 출입 관리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조치사항을 달리 적용하되(참고1), 지역사회 감염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상위 단계 시행 가능
- 보육교직원 외 외부인의 어린이집 출입을 자제하되,
 - 불가피한 경우 (예시: CCTV 고장수리, 정수기 및 공청기 필터 관리, 보육실습, 적응 기간 동안 학부모 참관 등) **코로나 19 발생장소 방문 이력, 발열 확인,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여 기록**
 - (1)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출입 금지
 - (2) 출입시에는 마스크 착용 및 손위생 실시, 보육실 출입 및 아동 접촉 최소화

3. 어린이집 등원·출입 시 관리 강화

□ 등원·출근 중단

-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보육교직원 또는 재원아동은 음성확인서 제출 시 까지 등원·출근을 중단할 것**
 - 다만, 병원 등에서 격리해제 되었으나 **음성확인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어린이집은 건강취약계층인 영유아가 단체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 **격리해제일부터 2주후 출근 또는 등원 가능** (입원치료 통지서 및 격리 통지서, 입퇴원확인서, 퇴소확인서 등으로 기간 확인)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보육교직원 또는 재원아동은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출근 또는 등원을 중단할 것**
 - ※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보호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어린이집(원장)에 연락하고,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
 - ⇒ 단, 38도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 보건소(☎ 1339, ☎지역번호+120)으로 문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진료
- 해외 또는 코로나19 발생 장소 여행력 있는 보육교직원 또는 재원 아동은 2주간 출근 또는 등원을 중단할 것
 - 동거인이 격리 면제 대상자이며 진단검사 결과 음성일 시, 보육교직원 또는 재원아동은 출근 또는 등원 가능

- 또한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출근 또는 등원을 중단
- 위 경우 **보호자 및 교직원**이 구체적 내용을 어린이집에 통보토록 하여 어린이집 감염예방 신속 대응
- 위 사항으로 업무배제된 보육교직원은 유급휴가 대상으로 인정 및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발열체크 등 건강상태 확인

- 등원 시 원장은 보육교직원·아동에 대해 건강상태 사전 체크 후 개인 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하여 **출입토록 관리**
-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발열검사* 실시(**1일 2회 이상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발열검사 실시 기준 참고**) 및 기록 관리 (서식1,2)
 - 통학차량 이용 아동은 학생은 탑승 전 발열검사 실시
 - * 탑승 전 발열검사 실시로 교통 흐름 방해 유발 등을 양해하는 문구를 차량 뒤편에 부착

<어린이집 발열검사 실시 기준>

- 실시대상 : 모든 아동 및 교직원(어린이집에 출입하는 외부인 포함)
- 실시장소 : 등원시에는 어린이집 실외, 보육시간 중에는 보육실 내
 - i) 아동들이 분산하여 등원하도록 출입 동선 지정
 - ii) 발열검사를 받기 위해 많은 아동들이 모이는 것을 방지
- 실시주기 : 등원 시 1회, 보육시간 중 1회 이상 실시하되 낮잠시간 전·후, 하원 전 등 실시시간은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조정
- 실시방법
 - i) 발열검사는 1차 체온 측정 결과 37.5℃ 이상 발열이 확인된 경우 잠시 후 재측정
 - ※ 발열검사 시 고막체온계를 사용하는 경우 렌즈필터를 알코올 등으로 소독하여 사용
 - ii) 발열검사시 호흡기증상(기침, 목아픔 등) 여부를 함께 확인
- 실시자 주의사항
 - i) 발열검사 실시자는 반드시 마스크(KF80 이상) 착용
 - ii) 기저질환자 또는 임신부는 발열검사 실시자에서 제외

⇒ 37.5℃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기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 (1) (등원 시) 발열검사 과정에서 위 증상을 확인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보육교직원은 바로 귀가 조치, 아동은 보호자에 인계, 귀가 조치

- *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더라도 기침, 호흡기, 발열등과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 다른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여 등원 불가(귀가 조치), 다만 체질상 기초체온이 높거나, 알레르기성 질환 등 아동의 특이체질에 기인하는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원 가능

(2) (등원 후) 유증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아래의 「4. 유증상자 발견 시 조치사항」에 따라 조치

4. 유증상자 발견 시 조치사항

- 어린이집 내 유증상자 발견 시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보육교직원은 즉시 귀가 조치, 아동은 보호자에게 연락
-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오기 전까지 수술용 또는 보건용마스크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보육교직원과 동석하여 대기하도록 함
 - * 동석하는 보육교직원은 보건용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및 손위생 철저히 준수
- ※ 어린이집 내 유증상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격리공간(1인실 원칙)을 확보하되, 별도 구비가 어려운 소규모 어린이집은 원장실, 교사실 등을 활용, 인근 시설의 유휴 공간 활용도 가능
- 보호자에게 연락 시 역학적 연관성(해외여행력, 확진환자 접촉력, 가족 내 유증상자 유무 등)을 확인하여 연관성이 있을 경우 1339 또는 보건소에 우선 문의
 - 보호자가 원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원장 또는 교사가 보호자가 지정하는 병원 동행, 아동이 진료받도록 함 (보호자 지정 병원이 없을 경우 어린이집 지정병원 이용, 대중교통 이용 자제)
- 기관 내 추가 유증상자를 확인하고, 유증상자의 이송 이후에는 격리 장소를 소독
- 진료결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의심)환자와 접촉한 보육교직원·재원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서식 1,2)
 - 의심환자와 접촉한 보육교직원 및 재원아동은 의심환자의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등원중단하고,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 머물도록 하며, 의심환자의 검사결과 음성이면 업무(등원) 복귀

- 단, 자택에 머물 시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만일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시,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연락토록 안내 조치

5.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폐쇄·휴원 기준

□ 일시폐쇄

- 재원아동 또는 종사자가 확진자 또는 접촉자인 경우 시·군·구청에 신고, 시설 일시폐쇄(출입금지) 조치
- *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자(재양성자) 발생 시는 일시폐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방역대책 본부 지침)
- (확진자 발생 시) 원 내 확진자 최종 등원일(근무일)로부터 14일간
- *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 확진되기 전부터 등원하지 않아 원내 접촉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시폐쇄하지 않을 수 있음
- (접촉자 발생 시) 접촉자 최초 검사 결과 음성 판정 시까지
 - * 최초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에는 확진자 발생 시 기준에 따름
 - * 격리 중 2차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더라도 확진자 발생 시 기준에 따름 (최종 등원일로부터 14일 간 일시폐쇄)

□ 휴원

- 각 지자체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휴원 실시(참고1)
- 휴원 시 긴급보육을 제공하고, 등원중단·업무배제, 발열체크, 외 부인 출입 자제, 소독 등 감염예방 조치 철저 등 지속 시행

6. 재개원 전 조치사항

□ 방역 및 감염예방 이행사항 재점검

- 어린이집 재개원을 위해 ① 감염 예방 관리 체크리스트(서식3)에 따른 점검 사항 재확인, ② 방역물품 충분히 확보, ③ 등원 예정 아동 건강상태 유·무선 확인, ④ 학부모 대상 개인 위생수칙, 부모가

준수할 사항, 어린이집 방역관리 사항 등 가정통신문, SNS 등을 통해 사전안내, ⑤ 장기간 미이용 시설(놀이터 등) 청결 관리 등 사전 준비 철저

Ⅲ 지자체 협조사항

- (현장 모니터링) 지자체는 어린이집 대응지침 준수여부 등 점검·이행 여부 모니터링 지속 실시 (서석3 참고)
- (감염관리책임자) 시설내 건강관리책임자 등을 지정하도록 조치 필요
- (보고체계 구축) 어린이집 내 의심환자 등 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토록 어린이집, 관할 시군구 및 시도, 보건복지부간 보고 체계 구축(매일)
- (격리시설 마련) 어린이집 내 유증상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격리 공간(1인실 원칙)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격리실 별도 구비가 어려운 소규모 어린이집은 원장실, 교사실 등을 활용하되, 인근 시설의 유휴 공간 활용도 가능
- (감염병예방 관리현황 확인) 지자체는 어린이집에서 발열체크 및 소독, 환기 등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조치
- (시설휴원 시) 지자체는 어린이집이 긴급돌봄이 원활히 유지되고, 필요시 부모돌봄 관련 지원사항이 안내되도록 조치 필요 및 지속 모니터링
 - *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사용 가능,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

참고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어린이집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구분	1단계 (생활속거리두기)	2단계	3단계
기본 방향	정상 등원	휴원 권고 - 긴급보육 실시, 가정 돌봄 권고	휴원 - 긴급보육 실시하되, 최소화 권고
□ 접촉의 최소화	- (특별활동) 가능 *생활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	- (특별활동) 자체 원칙, 외부강사 건강상태, 위험장소 방문 이력 확인, 외부강사와 아동간 밀접접촉 최소화 *보호자 동의 필요	- (특별활동) 금지
	- (외부활동) 가능 *생활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	(외부활동) 자체 원칙, 진행하는 경우 생활 속 거리 두기 준수, 밀접도 낮은 환경에서 진행 *보호자 동의 필요	- (외부활동) 금지
	- (집단행사 및 교육) 가능 *생활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	- (집단행사 및 교육) 취소 및 연기 원칙, 불가피하게 진행할 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집단행사 및 교육) 취소 및 연기
□ 어린이집 외부인 출입 관리	- (외부인 출입) 자체 원칙, 불가피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후 출입 허용	- (외부인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후 아동 없는 시간이나 교직원 및 아동과 접촉이 없는 공간에서 작업	- (외부인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후 아동 없는 시간이나 교직원 및 아동과 접촉이 없는 공간에서 작업

서식 1

재원아동 건강상태 모니터링 기록지(예시)

* 등원 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코물, 기침)등 이 있는 경우 즉시 등원 중단 및 귀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발열 체크리스트			
일자		건강관리책임자	(서명)

아 동 명	체크시간	체온	기침여부	조치사항
(예시) 000	08:50 14:20	36.5 36.5	부	-
△△△	09:00 14:00	36.5 37.5	부	모에 즉시 유선 통보 하고 원장실에 격리 후 모에 인계(15:00)

※ 해당 서식을 참고로 등원 시, 의심환자와 접촉 시, 외부인 출입 시 등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수정 사용

서식 2

보육교직원 건강상태 모니터링 기록지(예시)

* 출근 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코물, 기침)등 이 있는 경우 즉시 등원 중단 및 귀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발열 체크리스트			
일자		건강관리책임자	(서명)

교직원명	체크시간	체온	기침여부	조치사항
(예시) 000	08:50 14:20	36.5 36.5	부	
△△△	09:00 14:00	36.5 37.5	여	귀가조치

※ 해당 서식을 참고로 등원 시, 의심환자와 접촉 시, 외부인 출입 시 등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수정 사용

사식3

코로나19 대응 어린이집 감염 예방 관리 체크리스트

- **확인일시:** 20 년 월 일 (요일) 시
- **확 인 자:** 소속 _____ 이름 _____ (서명)

체크리스트		해당란에 ○ 표시		비고
		예	아니오	
협력체계 (1)				
• 비상연락체계 (격리시설-관할 보건소- 관할 사군구 및 사도)	마련 및 현행화 하였는가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되어 있는가			
인력 배치 및 관리(4)				
• 감염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모든 아동 및 보육교직원에 일일 건강체크를 시행하고 있는가 (발열, 호흡기증상 등)				
• 모든 아동 및 보육교직원 대상 감염병예방관리 교육을 수행하였는가				
• 격리실이 구비되어 있는가				
위생 및 방역 관리(4)				
• 어린이집은 자체 소독 지침에 따라 매일 소독하고 있는가				
• 어린이집은 수시로 환기를 하고 있는가				
• 손세척제와 휴지등이 충분히 비치되어 있는가				
• 어린이집 내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하고 있는가				
기타 특이사항				
(자유기술)				

붙임1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새	로	운		일	상		
생	활		속		거	리		두	기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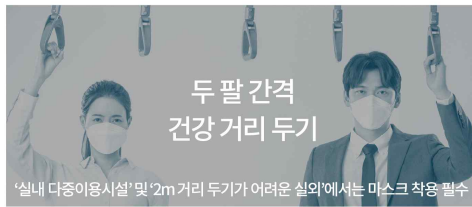
매일 두 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코로나19를 이기는 새로운 일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2020.05.06.



2020.05.06.



- 01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02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03 30초 손씻기·기침은 옷소매
- 04 매일 2번 이상 환기·주기적 소독
- 05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

붙임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 마스크 착용 >

①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 및 올바른 착용 방법

<일반 원칙>

- 마스크 착용보다 손 씻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가 없을 경우 면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착용 방법>

-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
-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아무 곳이나 두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제품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KF 94 이상)
-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예) 판매원, 요식업 종사자, (창구)상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대중교통 운전기사,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
-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예: 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 :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③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경우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붙임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 환경 소독 >

① 환경 소독의 일반 원칙

- 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소독 시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마스크,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소독제 중 적절한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 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직전 희석하여 준비(500~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묻혀 문지르고 10분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 깨끗한 물을 적신 천으로 다시 한 번 닦아냅니다.
* (500ppm 희석액) 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원액 5ml를 붓고(예, 생수통 1/2 뚜껑) 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 (1,000ppm 희석액) 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원액 10ml를 붓고(예, 생수통 1 뚜껑) 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또는 소독제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독제를 분사하고 닦지 않는 경우에는 분사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소독 효과가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독을 마친 후에는 사용한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② 가정, 사무실 등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 소독 시에는 손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 아이들의 손이 닿는 장난감 등은 소독 후 소독제가 묻어 있는 채로 입과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깨끗한 천으로 닦아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③ 공공장소 등 여럿이 오가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 소독 시에는 여러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곳(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 건물의 출입문, 승강기 버튼 등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많은 곳은 매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합니다.
- 시설 관리자는 청소·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개인보호 용품 (소독제, 종이 타월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합니다.
※ 그 외 소독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최신지침(2020.4.2.기준 [제3-1판]) 을 참조하세요.

붙임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①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외에도 여러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도와줍니다.
- 깨어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서 보내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텔레비전 시청 등)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 감염병이 유행할 때도 신체활동과 운동은 필요합니다. 실내에서 동영상을 보고 따라 하는 등 혼자 하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 신체 활동 강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자주 환기를 합니다.
- 어르신이나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체력, 신체조건 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 갑작스런 신체활동 및 운동은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않도록 합니다.

②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진료받으세요.
- 응급상황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 적정 시기에 예방접종을 받고, 정기 검진을 하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③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합니다.

- 평소에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식품을 건강한 조리법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 아침밥을 꼭 먹는 것이 좋으며,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습니다.

④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일반인 및 격리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 1577-0199), 확진자 및 가족 : 국가트라우마센터 ☎ 02-2204-0001~2)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에어컨 사용

① 일반원칙

- **(기본 방향)** 에어컨 사용 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인해 비말이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환기,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하기
- **(환기)**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공기가 오래 머물게 되면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신선한 외부 공기로 환기를 자주하기
- **(풍량)** 에어컨 바람이 사람의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의 세기를 낮춰서 사용하기

② 다중이용시설 사용시

-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 환기 시에는 가급적 자연환기 하며, 창문을 개방하여 맞통풍하기
- 자연환기가 아닌 기계환기를 하는 경우에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하여 최대한 외부공기로 환기하기
- 기계환기를 하는 경우에도 자연환기가 가능하면 병행하기
- 에어컨 바람의 방향은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게 하며, 바람의 세기는 약하게하기
- 에어컨의 가동하면서 선풍기를 사용하는 것은 내부공기 재순환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하기
- 에어컨 필터는 기기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 하기
- 에어컨 필터 청소 또는 교체 시에는 마스크, 장갑 등 기본적인 방호조치 하에 실시하고, 완료 후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준수하기
-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때에는
 -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 시설 내의 소독을 자주(최소 일 1회 이상) 실시하며,
 - 유증상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출입관리를 강화하기

③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유행지역의 경우,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은 가급적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기



질병관리본부
KCDC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 자가격리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 1항에 따라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에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제23조 제 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손소독 하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의무적으로 설치

※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앱과 연동되는 손목 안전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력의 조치되고, 격리 조치 위반자가 앱 설치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도 즉시 시설력의 조치됩니다. (사생활을 비롯한 자부담할 수 있음)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모니터링 방법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보건소(담당공무원)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발열(37.5℃ 이상) ☑ 기침, 호흡곤란 ☑ 오한, 근육통, 두통 ☑ 인후통 ☑ 후각·미각 소실 ☑ 폐렴

2020.5.13.



질병관리본부
KCDC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 ☑ 외부인 방문 제한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자가격리대상자의 동거인(가족 등)이 많은 사람과 접촉 및 집단시설* 관련 종사자는 자가격리자의 격리해제일까지 스스로 업무제한 권고

*집단시설: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발열(37.5℃ 이상) ☑ 기침, 호흡곤란 ☑ 오한, 근육통, 두통 ☑ 인후통 ☑ 후각·미각 소실 ☑ 폐렴

2020.5.13.

붙임7 올바른 체온 측정 방법

□ 체온을 측정하는 시기

- 운동 및 샤워 후, 먹고 마신 후나 실내외의 온도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 등에는 신체가 안정되도록 30분 정도 경과한 후 측정합니다.

□ 체온을 측정하는 방법



○ 귀속형 체온계 사용 주의사항

- 정확한 온도 측정은 귀를 뒤로 당겨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 측정용 필터가 일회용인 경우 반드시 측정 대상자마다 새로운 필터로 교환 사용하거나 알콜솜으로 깨끗이 닦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
※ 타인이 사용한 필터를 사용하면 중이염 등 감염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 수영이나 목욕 등으로 귀가 젖었을 때는 귀에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귀속형 적외선 체온계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귀지가 많거나 외이도가 작은 경우, 귀 감염이 있는 경우 등은 온도의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아동이 몸부림을 칠 경우 피부와 센서간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아 측정오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진정시킨 후 측정합니다.

○ 비접촉식 체온계 사용 주의사항

- 센서를 이마 중앙에 오도록 해야 하고 기기를 2~3cm 떨어뜨려야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 이마에 땀이 나면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땀을 닦고 측정합니다.

□ 기타사항

- 건강한 성인과 어린이의 정상 체온은 36.1℃ ~ 37.2℃이며 평균 정상 체온은 37.0℃입니다.
- 신진 대사가 높은 아이들의 체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배란중인 여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로 체온이 0.5℃ 높아질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성인은 대사가 낮아 체온이 0.3℃ 더 낮을 수 있습니다.
- 계절이나 하루 중 시간대에 따라 체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체온은 잠을 자는 오전 3시에 가장 낮고 바쁜 하루를 보낸 후 오후 6시에 가장 높습니다.
- 정확한 관독을 위해 매일 같은 시간에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붙임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고 대상

□ 아래 환자는 보건소로 즉시 신고

< 신고 대상 >

- | | | |
|--------|--|---|
| ○ (확진)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
| ○ (의사) |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접촉 한 자 | + |
| ○ (조사) |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 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 방문 | + |
| ○ (조사) | 최근 14일 이내에 '국내 집단발생' 과 역학적 연관성 | + |
| ○ (조사)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